

모두예술극장 운영규정

제정 2024.03.06.

개정 2024.09.27.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라 한다)이 조성한 모두예술극장(이하 “극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에 특화된 포용적 예술을 지향하는 극장으로서 창의적 문화공간 운영 및 장애예술 생태계의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대관” 이라 함은 연습,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제4조의 공연장, 창작공간을 장문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9.27.>
- ② “대관자” 란 공연장 및 창작공간에 대하여 대관절차를 통해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③ “대관료” 란 계약 체결 시 제11조에서 정하는 공연장 및 창작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 ④ “부가사용료” 란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대관료 외 계약 체결 이후 공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 장비사용료를 말한다.
- ⑤ “공연자” 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로 스태프, 출연자 전원을 말한다.

제 2장 대관

제4조(대관범위) ① 대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창작공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4.09.27.>

1.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가. 공연장

2. 대관할 수 있는 창작공간

가. 모두스튜디오

나. 연습실1

다. 연습실2

3. <삭제 2024.09.27.>

②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9.27.>

제5조(대관의 종류) ① 공연장, 창작공간 대관에 관한 일정, 방법, 심의기준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9.27.>

② 공연장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③ 공연장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을 위한 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

1. 준비대관은 무대 작업 및 공연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공연대관은 무대공연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무대 철수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행사대관은 공연 외 행사,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6조(대관절차) ① 공연장 대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대관공고

2. 대관신청

3. 대관심의

4. 대관승인

5. 대관계약 체결

6. 대관료 납부

7. 기획회의
8. 스태프회의
9. 공연티켓 판매 및 발권
10. 공연진행
11. 정산
12. 조사·점검·평가

② 창작공간 대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대관공고
2. 대관신청
3. <삭제 2024.09.27.>
4. 대관승인
5. 대관료 납부
6. 조사·점검

③ 대관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공연장 대관 신청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획대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9.27.>

② 대관의 신청접수는 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 접수로 대체 혹은 병행 활용할 수 있다.

③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관신청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대관의 승인은 제9조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자와 협의하여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극장 내 공간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1. 장문원 내부행사 또는 공동주최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행사
2.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장애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8조(대관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과 장문원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상행위 수반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극장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공연 또는 행사
4. 극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 또는 행사
5.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단, 제7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제9조(대관 심의위원회) ① 공연장 대관의 공정성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09.27.>

- ② 창작공간의 대관은 이사장이 승인한다. <개정 2024.09.27.>
- ③ 대관 심의는 제척, 기피, 회피제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④ <삭제 2024.09.27.>
- ⑤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의 변경) ①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명, 작품, 일정 등 대관 심의를 받아 승인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작품, 공연 일정(공연 횟수, 시간 등), 객석 변경은 대관 시작 60일 이전까지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문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타 변경 사항들은 장문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문원은 긴급정비, 안전진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대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는 이사장이 정한다.

②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내로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완납한다. 단, 장문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 조항이 있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이를 계약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0일 내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가사용료는 대관기간 종료 후 장문원이 별도 청구하며 대관자는 납부 통보일로부터 14일 내로 납부한다.

제12조(우대사항) 장문원은 제2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의 대관료를 할인하고 우선 대관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사용요금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무료 및 감면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1. 장문원 내부행사 또는 공동주최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행사
2.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장애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② 사용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1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의 취소) 이사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할 시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및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대관 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및 행사를 한 경우. 단, 60일 이전까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장문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대관 조건 및 장문원이 안내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기일 내에 계약 체결 또는 계약금 등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장문원이 극장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7.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제15조(대관료 반환) ① 장문원은 제14조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 취소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장문원이 판단한 경우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2. 장문원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을 반환한다.
3. 대관자가 대관 시작일 60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장문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6조(극장 사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 등) ① 극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극장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

0~13:00과 17:00~18:00)은 제외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장문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식사시간과 사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 1일 2회 이상 공연은 장문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휴일의 휴무 여부는 대관 공모시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17조(공연 진행 및 협조) ① 대관자는 장문원이 주최하는 기획회의와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이후 공연 진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장문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문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방염에 관한 서류를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문원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및 기계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문원은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④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장문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추가 보조석, 임의가설물 등을 운용할 수 없다.

제1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리 의무의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학류, 기름류 등 인화물질을 반입한 경우
2. 피난 및 방화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할 때
3. 시설물 및 장비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복구비용이 발생할 때

제20조(무대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극장 운영에 관한 확인·점검·조사·평가 등) 대관자는 장문원이 실시하는 확인·점검·조사·평가 및 극장 운영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장문원은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대관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2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극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연예술, 장애예술, 극장경영, 마케팅, 홍보, 시설, 대외협력 등 극장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단 구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연 기획, 제작 등 극장 운영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관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회의) 이사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①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소정의 자문 수당 및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4장 보칙

제26조(위임)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4.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9.27)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